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설치, 용도 등 (안 제3조 ~ 제6조)
- 나. 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등(안 제7조)
- 다.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8조 ~ 제11조)
- 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 ~ 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2013년 본예산에 10억원 편성(비용추계서 붙임)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립화장시설”이란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산 77-1번지 일원에 구미시가 건립하는 장사(葬事)시설을 말한다.
2.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이란 구미시 옥성면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미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장학사업 및 금융기관 이자소득사업
4. 옥성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경비. 다만, 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옥성면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정관을 두어야 하며, 정관을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협의체에 위탁한다.

제9조(기금 관리공무원) ① 법 제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 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2.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지급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현금출납부

제10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의 보고 및 환수) ①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정산)서에 사업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이 제6조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기금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명

2. 협의체 위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 이내

⑤ 제4항 각 호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5조(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담당 주사로 한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영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지원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illegible]

주민지원기금 지급대장

(단위 : 원)

[illegible]

현금출납부

(단위 : 원)

[illegible]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계획(정산)서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구 분	사업비 집행계획(집행내역)			비 고
	총사업비	기금지원액	자부담	
계				
집행예정액 (집행 액)				
잔 액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사업계획(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제안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구미시장 귀하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시립화장시설 유치를 위하여 2012. 5. 29일 “구미시 시립화장장 입지공모(제2012-700호)”시에 선정 읍면동에 주민지원기금 100억을 지원하기로 공고함에 따라 세출발생(조례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주민지원기금으로 1차년도 10억원, 2·3차년도 각 20억원, 4·5차년도 각 25억원으로 총 5년간 지원하는 것을 추계한다.

나.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기금	1,000,000	2,000,000	2,000,000	2,500,000	2,500,000	10,000,000
합 계	1,000,000	2,000,000	2,000,000	2,500,000	2,500,000	10,0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1,000,000	2,000,000	2,000,000	2,500,000	2,500,000	10,000,000
민 간						
기 타						
합 계	1,000,000	2,000,000	2,000,000	2,500,000	2,500,000	10,000,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사회복지과 강명천
연락처	054-480-515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소요비용

본 조례는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1차년도 10억원, 2·3차년도 각 20억원, 4·5차년도 각 25억원으로 총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음.

- 2013년 : 10억원×1년=10억원
- 2014년 ~ 2015년 : 20억원×2년=40억원
- 2016년 ~ 2017년 : 25억원×2년=50억원